論　壇

火協防火業務의 考察

金　炳　曉
〈技術硏究部 次長〉

1. 防火業務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

安全點檢을 主軸으로 한 火協의 防火業務는 어언 만 6歲가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業務를 대할 때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보다는 過去의 業務의 反復作業으로 完全한 軌道를 달리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무릇 世上萬事가 그렇듯이 일에는 起伏이 있기 때문에 火協의 防火業務로 크고 작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問題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要素에 대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가. 外的 要素

火協의 業務는 財務部와 內務部의 監督 等을 받도록 特別法에서 規定하고 있다. 그中에서 防火業務는 安全點檢이 主軸을 이루고 있고 安全點檢結果 指摘內容은 10日 以內에 行政命令을 發付하는 消防署 等으로 通報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通報되는 指摘內容은 消防法 等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法的 拘束力이 없기 때문에 通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火協의 安全點檢內容은 消防法 等에 明示되지 않는 事項은 아무리 必要하다 해도 法的 拘束力이 없어 指摘할 根據가 없다. 또한 그 反對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즉 現實的으로 防火上 不必要한 事項이라 해도 法에 明示되어 있기 때문에 不合理한 것일지라도 指摘할 수 밖에 없다. 現行關係法에 이러한 모순을 解決키 위하여 火協初創期에 關係法을 융통성 있게 援用하여 그 結果를 消防署에 通報해 본 結果 行政命令發付에 混亂을 招來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이 安全點檢內容은 現行關係法의 限界內에 있어야 한다는 前提가 있다. 國務總理訓令 122號(74.12.3)와 關聯된 細則을 보면 더욱 이를 實感하게 된다. 關係法 適用으로 因한 安全點檢의 硬直化에서 脫皮하려는 努力이 實務者 一部에서 强力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反하여 一部에서는 關係法水準까지만이라도 建物의 防火施設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消防法 等의 適用을 어느 時期까지는 適用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要素는 建物關係者의 防火業務의 受容態勢이다. 特殊建物의 火災統計를 보면 年間의 火災發生件이 150~200으로 特殊建物을 13,000件으로 보아 火災發生確率은 約 70~80年에 1回 火災가 發生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事實은 建物의 自然수명(耐火構造인 경우)을 90

年 정도로 볼 때(實際로는 이보다 훨씬 짧아 20~30年 정도임) 火災發生 頻度가 建物의 自然수명과 거의 同等하거나 더 짧게 되므로 防火에 대하여 別途의 對策을 세운다는 것은 經濟性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證明하는 것이 된다. 建物所有主는 火災를 自身과는 無關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火協의 防火業務에 否定的인 反應을 나타내어 火災危險事項을 임기응변적으로 넘기려고 하거나 아주 無視하는 경향이 있다. 安全點檢 및 確認點檢統計에서 防火業務의 希望的인 要素를 찾으려고 해도 그 結果는 火協의 防火意慾을 잃게 하고 있다. 이상이 火協의 防火業務가 극복해야 할 外的인 要素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內的 要素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나. 內的 要素

防火業務는 工學的 技術과 經驗이 左右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거나 競爭을 爲主로 하는 企業間의 實力差는 相對的이므로 남보다 잘하면 비록 그 質이 낮드라도 항상 利潤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火協의 防火業務는 競爭의 對象도 없으며 營利의 目的도 없는 純粹한 自然科學의 分野이다. 自然은 절대로 거짓이 없듯이 防火業務에서 企業에서 보는 속임수나 경쟁은 용납될 수 없다. 나만큼의 防火實力이 있는 사람이 없다 해서 안일을 추구한다면 防火業務는 그 時點에서 停滯가 있을 뿐이다. 科學의 탐구에는 끝이 없다. 새로운 類型의 火災危險이 계속 發生하고 있고 이를 豫防 乃至 減少시키는 것이 防火業務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묵묵히 災難에 도전하는 더디고 험한 외로운 眞理探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여건은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要素가 있다. 첫째, 火災經驗이 不足하다는 것이다. 特殊建物의 火災는 年間 約 200여건에 이르고 있고 지난 6年間 總 1,000여건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重要한 要素로 防火業務에 活用(Feed Back)할 여력이 없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先進國의 경우는 國內의 經驗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外國의 火災 경험도 電算化로 수집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지난 6年間 貴重한 보물 1,000餘件(特殊建物火災發生)을 놓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昨年부터 뒤늦게나마 本格的인 火災現場調査業務의 着手는 多幸이라 생각한다. 둘째 防火理論의 결핍 및 이를 받아들이는 態勢이다. 防火業務를 關係法 等으로 劃一的으로 規制할 수는 없다. 이는 防火科學은 成長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防火科學에 관한 資料는 지난 6年間 質 및 量的으로 熱心히 收集하여 왔으므로 이제는 상당한 防火技術資料를 보유하게 되었다. 防火技術은 獨自的인 分野이기 보다는 聯關科學의 分野이므로 資料도 單行本보다는 報告書(Report)나 論文의 性格을 가지게 된다. 이들 資料를 消化하기 위해서는 學究的이고 인내심을 必要로 한다. 그러나 職場人은 學問을 硏究하면서 實務에 임하도록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現在 關係法의 適用을 위주로 한 火協의 防火業務와 建物所有主의 非協助的인 태도는 火協技術職의 學究的 意慾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이를 是正하기 위하여 職員의 論文 等을 권장하여 學究的 분위기 造成에 勞力하고 있지만 負擔스러운 面이 없지 않다. 防火技術은 우리로서는 새로운 分野인데다가 歷史마저 짧아 이 分野에 精通한 理論이나 經驗을 앞세울만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脆弱點을 補完하기 위해서는 火協指導級幹部들의 海外硏修敎育 等이 不可避한 實情인데 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또 다른 要素는 防火理論을 證明할 수 있는 施設이 전혀 準備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現在의 여건으로서는 사치스러운 要求일지는 모르지만, 充分한 實驗施設은 理論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必須的 要素가 되는 것으로 火協自力으로는 힘겨운 일이고 外部에 依賴하려고 해도 아직 이러한 施設을 갖춘 機關이 없음은 아직도 防火技術의開發이 험난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防火技術人力은 앞으로도 얼마간은 외로운 길을 開拓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도 하다.

2. 火協의 防火業務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가. 火協 防火業務의 취지

火協의 設立취지는 特別法에 잘 表現되어 있다.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은 火災로부터 人命 및 財產을 보호하고 特定建物에 대하여 災害復舊와 人命被害를 適正하게 補償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다. 特別法에 의하여 特殊建物로 指定되는 全國의 約 13,000件의 對象物이 義務的으로 保險에 加入하게 되어 있고, 火協은 安全點檢을 實施하도록 되어 있다. 즉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保險加入의 義務가 있고 火協은 安全點檢實施의 義務가 있다. 이는 特殊建物所有者에게 保險加入을 義務化하는 代身 保險會社는 特殊建物所有者에게 써비스로 建物의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保險事業에 대하여 문외한인 필자이지만 保險加入이 義務化함에 따라 附加保險料에서 一定한 節約을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純保險料 및 經費를 除外한 保險料를 安全點檢 및 消防用 器機의 寄贈等 防火事業을 爲하여 社會에 還收하자는 것이 火協設立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火協防火業務의 主軸인 安全點檢은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약간의 問題가 있다 하겠다. 大部分의 特殊建物所有者는 써비스로서의 火協의 安全點檢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特別法에는 安全點檢結果는 10日 以內에 消防署로 通報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이를 接受한 消防官署 等은 所有者에게 行政命令으로 處理되고 있다(國務總理訓令 122號). 또한 公務員의 不條理를 減少시키기 위하여 保險會社로 하여금 防火檢査를 代行케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라는 行政府의 意見으로 行政命令의 履行與否를 確認하는 確認點檢까지도 火協이 擔當하게 되었다(서울, 釜山에 限함). 이러한 關係는 結果的으로 安全點檢이 行政命令의 前段階로 建物所有者에게 負擔을 주고 있고 이 때문에 安全點檢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建物所有者에 대한 순수한 써비스라기보다는 行政官署의 防火檢査的인 强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建物所有者는 勿論 火協自體로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될 것이다. 消防官의 消防檢査에 不應하는 者는 公務妨害에 該當되나 火協의 安全點檢不應時의 措置는 비록 消防法上 火協의 安全點檢을 消防檢査로 看做하도록 規制化하고 있으나 特別法의 취지로 보아 순수한 써비스를 强制化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强制化한 保險加入에 補償하는 길은 建物所有者가 願하는 써비스活動뿐이다. 그러므로 火協은 保險料를 징수하는 일외에는 오로지 建物所有者的인 立場에서 業務를 遂行하는 것이 火協에 有益한 結果가 될 것이며 火協의 설립취지를 理想的으로 實現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 業務推進方向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火協防火業務의 大前提는 建物所有者(被保險者)에 대한 無條件의 써비스라 할 수 있다.

1) 行政官署와의 關係

安全點檢結果와 行政命令과의 關係는 現在의 行政命令 發付의 代行에서 善意의 建物所有者는 철저히 保護하고 惡意의 建物所有者에 대하여는 철저히 규명하는 等 오히려 行政命令의 濫發에 制動의 구실로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現行法 때문에 改修가 不可避한 指摘事項에 대하여는 火協이 경과기간을 行政關署에 要請하여 피보험자를 保護하여야 한다. 現在와 같이 行政官署에서 指摘하지 못하는 事項을 火協에서 指摘하여 行政官署로 하여금 建物所有者에게

行政命令이 發付되도록 하는 일은 즉시 是正되어야 한다. 特殊建物의 安全點檢結果는 正確한 統計分析으로 現行關係法을 現實에 맞도록 合理的으로 改正하는 目的에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行政命令의 履行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確認點檢은 自然히 그 對象이 현저하게 減少되며 이에 따라 行政官署, 火協 및 被保險者의 셋 모두가 有利하게 될 것이다.

2) 火災豫防業務

겉으로 보기에는 前項과 같이 한다면 火災를 豫防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火災를 助長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火協이 現在 點檢하는 內容은 防火管理나 消防署의 消防活動 等은 點檢項目에서 취급할 수 없다. 火災調査에서 밝혀진 結果를 보면 대부분의 火災가 防火認識의 不足等 防火管理의 不在가 原因이 되고 있으며, 鎭火面에서 볼 때에도 自體消防施設에 依한 鎭火보다는 大部分이 消防官에 의한 消防裝備로 鎭火가 可能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火協의 防火業務는 防火管理者를 철저히 敎育시킬 수 있는 制度가 必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火協은 우수한 防火管理者들에 대하여 示範的으로 다만 한 두 사람이라도 先進外國에 派遣敎育시킬 수 있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消防裝備의 現代化 및 機動力을 增加하기 위한 硏究 및 경제적인 뒷받침을 現在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主導하여야 한다. 그러면 現在의 安全點檢은 어떻게 할것인가. 勿論 安全點檢은 繼續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在와 같은 半强制性에서 脫皮해야 할 것이다. 新築建物은 철저한 安全點檢을 하여 建物에 대한 정확한 資料를 항상 火協이 保有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 번 安全點檢을 實施한 建物은 建物所有者의 要請이 있을 때에만 點檢하도록 한다. 이러한 方法은 당장은 施行할 수는 없겠지만 防火管理者의 철저한 교육 및 消防裝備의 신뢰감이 증가됨에 따라 火協으로 하여금 安全點檢要請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確信한다. 安全點檢은 建物所有者에게 安全性 및 經濟性의 두가지 側面에서 實施可能한 對策을 어드바이스 할 있 수도록 하고 여기에는 必然的으로 保險設計까지도 包含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各企業에 經濟的 利益을 가져다 주는 所謂 火災危險管理(Frie Risk Management)에 대하여 火協은 어드바이서로서의 無限의 能力을 發揮함므로서 點檢者는 勿論 火協防火業務의 對外的 信賴度는 높아질 것이다.

다. 防火業務의 經濟性

火協의 防火業務도 人力, 裝備 및 資金이 投入되는 以上 經濟性을 追求함은 必須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火協의 防火業務는 그 結果 公益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가 더 重要하다고 본다. 勿論 最少의 經費로 最大의 效果를 거둘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 가장 理想的이라 할 것이다. 계몽 및 연구사업은 장래의 利益을 내다보는 事業이며 당장의 利益을 바라는 事業은 아니다. 그러므로 防火業務의 經濟性을 追求하기 위하여는 長期綜合計劃(Master Plan)을 마련하고 이를 基準으로 實績 및 經濟性을 따져야 할 것이다. 現在의 官의 代行業務로서의 防火業務는 소멸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建物所有者側에서 보면 官이 하나 더 늘어난 결과로 되며 官의 安全點檢實力 및 豫算이 火協과 同等해지는 時點에서 火協의 防火業務는 官에 協助할 일이 없어지게 되어 獨自性을 잃게 될 수도 있다. 安全點檢의 效果로 火災被害의 減少를 數値로 證明하려고 現在의 安全點檢結果의 經濟性을 分析하려는 試圖는 마치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일과 비유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自己의 病을 숨기지 않고 病院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必要가 없어지듯이 建物關係者가 스스로 火協에 協助를 要請하게 된다면 그 建物은 火災에서 救할 수 있다.

3. 防火業務의 現實 및 우리의 마음 가짐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防火業務의 앞길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要素가 있다. 現在까지 이루어논 일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防火事業을 推進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 防火業務가 社會에 미친 影響

防火關係法(消防法, 建築法, 電氣事業法等)의 技術關係規定은 技術者(專門人)가 아니면 理解하기 어렵다. 行政機關의 實務者조차 이러한 技術關係規定에 대하여 理解가 困難한 部分이 있는 것 같다. 또한 建物關係者(所有者, 管理者等)에게는 더욱 難解하다. 1973年부터 火協의 專門敎育(大學卒業者 以上 對象)을 받은 技術者들은 이들 關係法을 하나하나 立法 취지부터 硏究하여 이를 特殊建物에 適用하여 行政機關 및 建物關係者에게 周知시켜줌으로서 防火關係法規에 대하여 理解하기 시작하였다. 過去에는 適法하다고 믿었던 防火施設이 關係法規의 基準에 部分的으로 未達한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防火施設은 建物設計當時에 備置하지 않으면 竣工後에 이를 改修하기 위하여 數倍의 經費가 所要된다. 그러므로 建物 關係者는 이를 是正하기보다 設計·竣工·許可 擔當行政機關에게 責任을 轉嫁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許可時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認識하게 되었다.

나. 安全點檢의 分析結果

1) 火災現況

1979年 1月부터 3月까지 發生한 特殊建物의 火災는 60餘件으로 그 中에서 40件에 대한 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火災原因

暖房 및 可熱器具	計 23件
○石油煖爐取扱不注意	13 件
○바나周圍漏油等	5 件
○石油램프塡倒	1 件
○온돌아궁이 周圍의 可燃物	1 件
○電氣장판 過熱	1 件
○熱風爐 過熱	1 件
○연탄煖爐 過熱	1 件
담배불 引火	4 件
粉塵	1 件
香불	1 件
熔接불티	2 件
隣接建物에서 廷燒	1 件
原因不明	8 件
計	40 件

나) 鎭火方法

消防器鎭火	30 件
消防器와 自體鎭火	10 件
計	40 件

다) 火災發見

自動火災探知設備의 作動에 의한 發見	2 件
肉限 發見	38 件
計	40 件

라) 人命被害

死亡	17 人
負傷	59 人

以上의 統計로 보면 석유난로 취급부주의로 因한 火災가 13件(32.5%)으로 首位이다. 소형석유난로는 고정난방설비가 아니고 수시 이동이 가능하며,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관계로 安全點檢時 석유난로(特히 소형석유난로)에 대하여 지적이 困難한 면이 있다. 鎭火狀態를 보면 消防署單獨 鎭火가 30件(75%)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소방서의 消防裝備와 自體消火設備를 함께 使用하여 鎭火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安全點檢時 建物自體消防施設 點檢에 置重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自體鎭火 實積이 未洽한 것은 問題點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또한 火災의 早期發見이 鎭火에 重要한 要素임에도 自動火災探知設備

에 의한 早期發見이 40件中 2件 뿐이라는 事實도 注目할만하다. 人命被害面에서도 死亡 0.43人/件 및 負傷 1.48人/件으로 火災 1件當 1.9人의 死傷者가 發生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統計는 冬節期 3個月間의 火災現況이므로 이것으로 特殊建物의 火災의 現況을 추측하기에는 未洽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事項은 注目할만한 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가) 冬節期에 석유난로의 取扱은 火協 自體에서 對策을 세워 安全點檢時 철저하게 檢査한다.

나) 迅速한 火災의 發見과 火災申告를 設備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安全點檢에 反映한다.

다) 자동식消火設備外의 手動式消火施設은 火災時 有効性이 별로 없으므로 發火室에서 自體鎭火가 가능하도록 防火區劃等을 强化하도록 한다.

라) 避難階段이나 避難器具가 法的으로 要求되지 않는 建物에서도 人命被害가 發生하였다. 不特定人이 많이 모이는 場所에는 2 以上의 非常口를 두도록 安全點檢에 反映한다.

2) 安全點檢分析現況

安全點檢의 統計에 의하여 1年에 1回 分析하고 있다. 現行安全點檢統計에서는 建物單位로 統計되고 年間 總點檢對象을 統計對象으로 하고 있다. 統計의 目的은 安全點檢의 効果測定에 있으며 分析結果는 關係行政機關에 建議하고 있다. 現行統計는 安全點檢効果 測定에 있어 두가지 問題點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는 新規建物이 統計對象에 追加되기 때문에 同一對象에 대한 點檢効果測定은 不可能하다. 다음으로 測定項目은 現行關係法과 對比 不良, 良好等을 集計하고 있으나 關係法이 수시로 改正됨에 따라 不良, 良好率에 큰 差가 發生한다. 以上의 두가지 事項으로 因하여 防火的으로 正確한 點檢効果추세의 測定이 困難하지만 現在 關係法에 얼만큼 適法한가는 正確하게 測定할 수 있다. 1974年부터 1978年까지의 安全點檢統計를 要約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가) 綜合現況

다음 그림에서 보면 關係法에 얼만큼 適法한가를 알 수 있다. 74年度에 상당 良好率이 높은 것은 點檢開始 當時 關係法을 充實히 指摘하지 못한 結果로 볼 수 있다.

年度別 良好率 (1974～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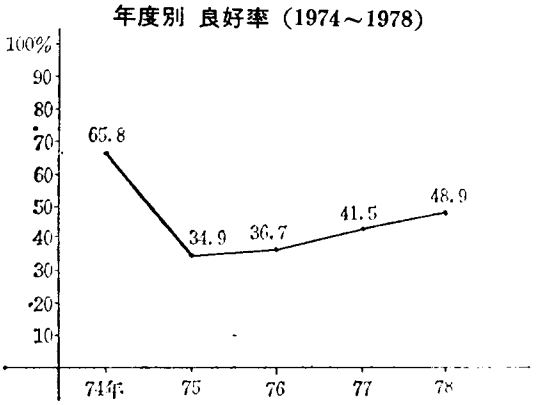

이 그림에 의하면 特殊建物로서 關係法(消防法, 建築法, 電氣事業法等)에 훨씬 未達되는 것으로 1978年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建物에서 防火關係法에 適合한 것은 약 50%, 나머지 50%는 適法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每年 조금씩 良好率이 增加하고 있음은 安全點檢의 効果라 할 수 있다.

나) 人命安全施設

火災時 建物로부터 脫出하는 安全한 施設에는 特別避難階段과 避難階段이 있다. 이들 避難施

避難施設의 良好率 (1674～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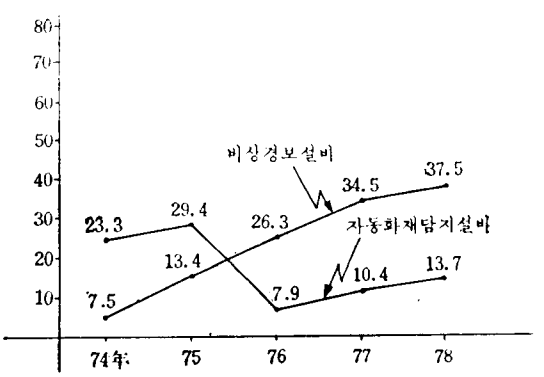

設의 良好率은 위의 그림과 같다.

1978年을 基準하면 18.5%만이 良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全體建物의 약 80% 정도는 安全한 避難施設이라 할 수 없다. 火災時 人命被害를 減少시키기 爲하여 建物自體의 避難施設確保는 必須的임에도 不拘하고 現況은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 發火危險

發火源을 除去할 수 있다면 火災는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建物內의 發火源을 減少시킨다는 것은 困難하다. 關係法에서는 이들 發火源을 安全하게 管理하여 發火危險을 除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安全點檢에서 指摘된 發火危險中 重要한 事項에 대한 良好率은 다음 그림과 같다.

發火危險施設의 良好率 (1974~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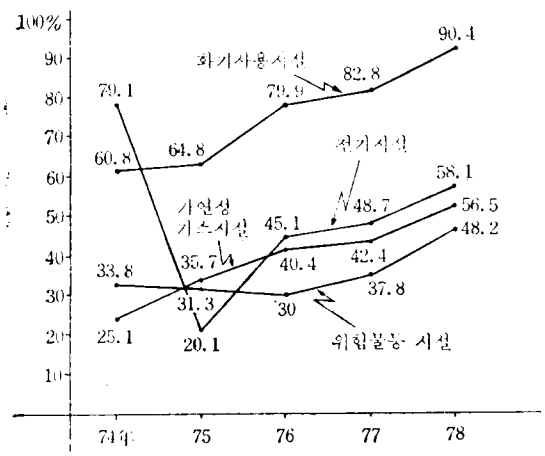

電氣施設의 良好率의 振幅이 큰 것은 關係法의 基準이 달라진 結果이며 실제적인 危險度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없다. 火氣使用施設이 가장 良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火災調査結果에 의하면 석유난로 等으로 因한 發火件數가 높은 頻度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실제와 다르다. 그 理由는 고정난방 器具以外의 移動用 난방기구는 安全點檢時 指摘해야 할 法的 根據가 未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近來에는 LPG로 인한 事故가 頻繁함에도 良好率은 56.5%(1978年)로 아직도 事故危險이 많다고 할 수 있다. 危險物 施設은 가장 良好率이 低調하나 위험물 시설양호율의 저조理由中 大部分은 저장시설의 구획, 보안거리 유지 등 發火危險보다는 延燒危險에 관한 事項이 適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라) 火災警報施設

火災狀況을 보면 火災의 早期發見과 火災被害와는 直接的인 關係가 있었다. 즉 火災의 발견이 빠를수록 人命安全은 勿論 初期鎭火가 可能하였다. 消防法에서 定하고 있는 火災警報施設中 가장 一般的인 것은 非常警報設備와 自動火災探知設備이다. 아래 그림에서 特殊建物의 良好率을 보면 前者는 手動으로 作動하며 設置費도 後者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良好率이 높다. 自動火災探知設備가 76年에 급격히 不良해진 것은 消防法에 煙感知器가 追加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火災警報施設의 良好率 (1974~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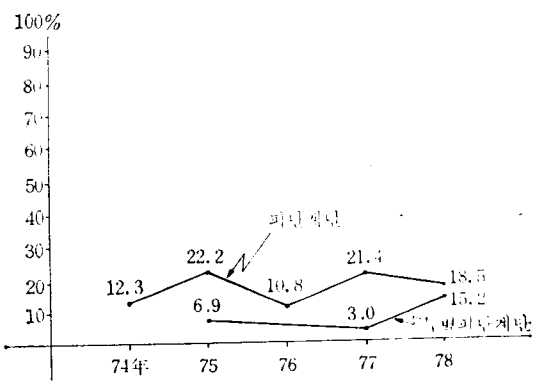

마) 火災制限(CONFINEMENT)施設

火災가 發生하드라도 防火區劃이 되어 있으면 延燒를 防止할 수 있고 耐火構造, 不燃材料의 內裝材는 火災의 急速한 擴大를 防止하는 역할을 한다.

이中 가장 效果的인 火災制限施設의 防火區劃

火災制限施設의 良好率 (1974~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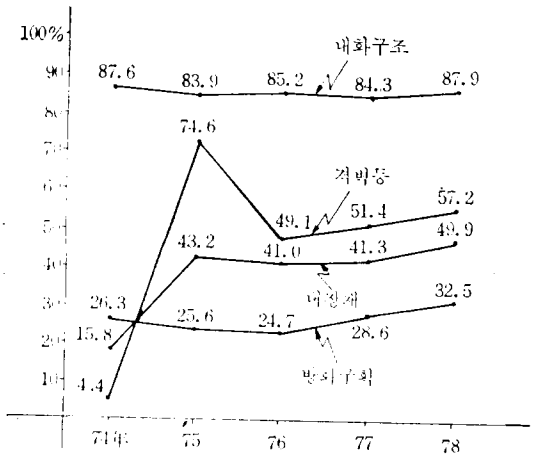

이라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防火區劃이 關係法에 適合한 것은 每年 24%~33% 範圍로서 상당히 不良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比하면 耐火構造의 良好率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結果는 火災時建物의 火災로 因한 도괴 等의 피해는 없지만 內部는 全燒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바) 消火施設

建物內에 設置하는 消火施設은 自動式 消火施設을 除外하면 大部分이 手動으로 火災時 그 效果가 의문시 되는 初期, 消極的 消火施設이라 할 수 있다. 火災統計에서 알 수 있듯이 自體消

消災施設의 良好率 (1974~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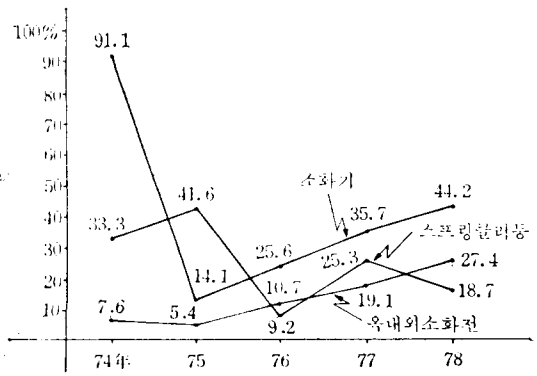

火施設에 의한 鎭火는 거의 不可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初期消火施設은 火災早期發見이 可能할 경우에만 有效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等의 自動式 消火設備는 스스로 火災를 早期發見하여 消火하기 때문에 가장 確實한 消火施設일 뿐만 아니라 人命安全 및 延燒防止에도 效果的인 對策이 될 수 있다. 이러한 理想的인 消火施設의 設置狀態를 그림에서 보면 78年에 18.7%만이 良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防火人으로서의 마음가짐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事項이 火協 防火業務에 肯定的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行政命令의 濫發, 良好率의 둔화 等은 防火人에게 의욕을 상실시키는 要素가 된다. 그러나 特殊建物의 1火災當 1.9人의 死傷者가 發生하고 있는 現實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 大形火災事故危險 및 높은 火災發生頻度를 가지고 있는 特殊建物의 火災豫防業務에 임하는 우리의 姿勢는 이대로 滿足한 것인가? 火協의 防火人의 任務는 神聖한 것이다. 나의 편안함을 追求하지 않고 남의 安全 및 利益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防火人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火災로 因한 불편을 덜기 위한 구실로 평소에 건물소유자를 不便하게 할 수는 없다. 强壓보다 自律이 훨씬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나쁜짓하는 한명을 열명이 지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火協의 防火業務는 特殊建物과 防火業務에 교량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지 不良 防火施設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火協이 對外的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끝으로 이에 대하여 다시 提言코자 한다.

○指摘事項의 行政命令化 濫發抑制
○消防力(人力및裝備)增强을위한적극적인補助
○優秀防火管理者(特殊建物)의 海外研修 〈끝〉